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등 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부지 내 거주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영구임대주택은 누락되어 있어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 일부 임시 거주자는 종전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지 인근의 영구임대주택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건설근로자 중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가점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갖춘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같다]에서 건설되는”을 “같다]내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량 또는 매입량”을 “전체 호수”로 한다.

별표4 제3호나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 3점, 이 경우 가)·나)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른 피보험자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 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로 확인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 건설근로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가목

9)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u>건설량 또는 매입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u>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 --- <u>제14조, 제15조</u> ----- ----- ----- ----- ----- ----- ----- ----- ----- ----- ----- ----- ----- ----- ----- ---- <u>같다</u>] 내 영구임대주택, -- ----- ----- ----- ----- ----- ----- <u>전체 호수</u> ----- ----- ----- ----- -----

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
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